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2018. 10.

계명대학교 교무처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u>교원의 교수시간, 재계약 및 재임용</u></p> <p>제65조(교원의 교수시간)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예·체능계 교원의 교수시간은 따로 정한다.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장 <u>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u></p> <p>제85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은행제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양 30학점 이상, 해당 전공 60학점 이상 등 총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함 학사학위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함 <p>②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제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의 학점, 독학사시험면제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p> <p>③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 중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u>교원의 구분, 교원의 교수시간, 재계약 및 재임용</u></p> <p>제65조(교원의 구분 및 교수시간)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한다.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직급은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및 객원교수 등을 말한다.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 <p>②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예·체능계 교원의 교수시간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장 <u>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u></p> <p>제85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은행제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양 30학점 이상, 해당 전공 60학점 이상 등 총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함 학사학위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함 <p>②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제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의 학점, 독학사시험면제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p> <p>③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한</p>	<p>교원의 구분 추가 신설 항 분리</p> <p>원격교육원 추가</p> <p>원격교육원 추가</p> <p>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는 전공 18학점 이상과 <u>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한 평가인정학습과목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u></p> <p>< 신설 ></p> <p>④ <u>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오르간 전공자는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공실기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u></p> <p>제86조의1(학위수여) ① (생략)</p> <p>② <u>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u></p> <p>③ <u>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u></p> <p>< 신설 ></p> <p>제86조의2(학적관리) ① (생략)</p> <p>② <u>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증명서를 발급하며 우리 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자에게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u></p> <p>③ (생략)</p>	<p>학점 중에는 전공 18학점 이상과 <u>평가인정학습과목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 <u>평가인정학습과목의 학점은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 원격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원에서 학위를 수여시 해당 교육원 학점만으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u></p> <p>⑤ <u>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오르간, 실용음악 전공자는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공실기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제86조의1(학위수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3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u></p> <p>③ <u>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전공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 교육과정 전공과 다른 경우 유사전공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전공유사성 심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p> <p>④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u></p> <p>제86조의2(학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학점은행제 수강생에게는 수강증명서를 발급하며 학위수여자에게는 우리 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평생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 학점은행제로 등록한 수강자는 이전 학칙을 준용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항 신설</p> <p>항번호 수정 실용음악 추가 문구 수정</p> <p>학사학위 종류 별도 표기 문구 수정</p> <p>항 추가</p> <p>문구정비 및 발급 증명서 명칭 변경</p> <p>개정이전 수강자를 위한 경과조치</p>

편 영	개 정(안)	비고																		
<p>< 신설 ></p>	<p>[별표 3]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의 종류[학칙 제86조의1(학위수여)와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037 352 1243 387">구분</th> <th data-bbox="1243 352 1547 387">학과(전공)</th> <th data-bbox="1547 352 1865 387">학위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37 387 1243 842" rowspan="8"> 평생교육원 원격교육원 </td> <td data-bbox="1243 387 1547 427">국어국문학전공</td> <td data-bbox="1547 387 1865 427">문학사</td> </tr> <tr> <td data-bbox="1243 427 1547 467">경영학전공</td> <td data-bbox="1547 427 1865 467">경영학사</td> </tr> <tr> <td data-bbox="1243 467 1547 507">사회복지학과</td> <td data-bbox="1547 467 1865 507">문학사</td> </tr> <tr> <td data-bbox="1243 507 1547 663">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오르간과 </td> <td data-bbox="1547 507 1865 663">음악학사</td> </tr> <tr> <td data-bbox="1243 663 1547 730"> 회화과 패션디자인과 </td> <td data-bbox="1547 663 1865 730"> 미술학사 패션학사 </td> </tr> <tr> <td data-bbox="1243 730 1547 798"> 체육학전공 태권도학과 </td> <td data-bbox="1547 730 1865 798">체육학사</td> </tr> <tr> <td data-bbox="1243 798 1547 842">뮤직프로덕션과</td> <td data-bbox="1547 798 1865 842">예술학사</td> </tr> </tbody> </table>	구분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평생교육원 원격교육원	국어국문학전공	문학사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오르간과	음악학사	회화과 패션디자인과	미술학사 패션학사	체육학전공 태권도학과	체육학사	뮤직프로덕션과	예술학사	
구분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평생교육원 원격교육원	국어국문학전공	문학사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오르간과	음악학사																		
	회화과 패션디자인과	미술학사 패션학사																		
	체육학전공 태권도학과	체육학사																		
	뮤직프로덕션과	예술학사																		

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가. 개정사유

- 1)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제도 폐지에 따른 개정
- 2) 간호대학 편입학생 선발에 따른 학점인정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1) 제37조제1항제1호 자격증 취득에 따른 성적 인정 제도 폐지(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 성적 정정은 유지
- 2) 제50조(학점인정)
 - 간호대학 편입학생 학점인정 근거 마련

다.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37조(특별학점 취득) ① 「학칙」 제36조에 의한 특별학점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증)취득 등에 따른 <u>학점인정</u>은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TOEIC, TOEFL, HSK, JPT, 일본어능력시험, DELF, DALF, DSH, ZDaF, Test DaF, Goethe-Zertifikat(GER), TORFL, 한국어능력시험 등에서 해당점수이상 취득하거나 MOS Master, ICDL 자격 취득 시 별표 1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을 <u>인정</u>할 수 있다. 2. ~ 5. (생략) <p>② (생략)</p> <p>[별표 1]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 및 정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생략) ③ <u>2014학년도 이후</u> 입학생 중 영어영문학과(전공), 중국어문학과(전공), 일본어문학과(전공), 독일어문학과(전공), 러시아어문학과(전공) 소속 학생의 경우는 “전공기초외국어” 과목만 인정 또는 정정 가능 <p><신설> <이하 표 내용 생략></p>	<p>제37조(특별학점 취득) ① 「학칙」 제36조에 의한 특별학점 취득에 따른 <u>학점정정</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증)취득 등에 따른 <u>학점정정</u>은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TOEIC, TOEFL, HSK, JPT, 일본어능력시험, DELF, DALF, DSH, ZDaF, Test DaF, Goethe-Zertifikat(GER), TORFL, 한국어능력시험 등에서 해당점수이상 취득하거나 MOS Master, ICDL 자격 취득 시 별표 1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을 <u>정정</u>할 수 있다. 2. ~ 5.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 및 정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2014 ~ 2018학년도</u> 입학생 중 영어영문학과(전공), 중국어문학과(전공), 일본어문학과(전공), 독일어문학과(전공), 러시아어문학과(전공) 소속 학생의 경우는 “전공기초외국어” 과목만 인정 또는 정정 가능 ④ <u>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수업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만 정정 가능</u> <p><이하 표 내용 현행과 같음></p>	<p>문구수정</p> <p>기 취득학점 정정으로 문구수정</p> <p>자격증 취득에 따른 성적 정정으로 문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편입학생의 학점인정</p> <p>제50조(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학점 인정표 생략> ① ~ ⑥ (생략) < 신설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편입학생의 학점인정</p> <p>제50조(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학점 인정표 현행과 같음>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간호대학 편입학생의 성적인정은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이 개정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격증에 의한 성적인정 및 정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표1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성적등급을 인정 또는 정정할 수 있다.</p>	<p>간호 편입생 학점인정 향 신설</p> <p>자격증 취득에 따른 성적 정정 경과 조치</p>